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해영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8470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. 8. 10.

발의자 : 김해영 · 고용진 · 주승용
서형수 · 전재수 · 이찬열
윤호중 · 이동섭 · 제윤경
이학영 · 양승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리점이 공급업자를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함.

또한,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·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.

이에 따라서,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,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한편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

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7조의2 신설). 아울러,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(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32조제2항),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12조제4호 신설).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포상금의 지급 등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, 포상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, 거짓신고, 거짓진술,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
 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서면실태조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, 조사기간, 조사내용, 조사방법,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, 요구사유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하의”를 “이하,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
제32조제2항 중 “이하의”를 “이하,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,
포상금 지급의 기준·절차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
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
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
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,
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
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
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
거수집, 거짓신고, 거짓진술,
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
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
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
은 경우

3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
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
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
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
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

<신 설>

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서면실태조사) ① 공정

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, 조사기간, 조사내용, 조사방법,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, 요구사유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32조(과태료)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

제32조(과태료) ① -----
